

2020.03.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주요 국가별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관한 법적 취급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가항력을 근거로 한 책임 면책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불가항력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기본 법리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각 국가별로 개념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i) 행위자가 해당 사건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고, (ii) 사전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iii) 손해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외에도 개별 계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이행의 중지, 의무이행을 위한 기간 연장의 요구, 또는 특정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할 채무인 경우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법률에 의한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I. 미국

미국의 경우, 어느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지에 따라 불가항력의 법적 취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해당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법원은 대체로 불가항력 조항을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sup>1)</sup>. 따라서 불가항력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건의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사건이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건이 계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불가항력 사유에 포섭된다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비로소 불가항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법에 의하면,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사유'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둔 경우에도,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과 동일한 종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불가항력을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계약상 불가항력조항이 자연재해, 국가 또는 산업 전반의 파업, 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등을 열거하면서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초래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불가항력에 기한 의무이행 면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불가항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문구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주법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II. 영국

---

영국에서 불가항력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 계약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에 관한 계약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만약 불가항력 사유와 다른 사유가 결합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에 관한 계약 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채무자는 '계약의 좌절(frustration)' 법리를 이용하여 계약상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국법상 '계약의 좌절'을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로워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Kel Kim Corp. v. Cent. Mkts., Inc.*, 70 N.Y.2d 900, 902 (1987) (holding that force majeure defense is narrow and excuses nonperformance "only if the force majeure clause specifically includes the event that actually prevents a party's performance").

---

### III. 프랑스

---

계약책임과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 제1218조는 '계약상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회피할 수 없는 등 채무자가 통제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저지하고 있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불가항력의 요건 3가지가 ①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외부적 요인일 것 ②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도 해당 사유의 발생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조문은 일시적 불가항력과 영구적 불가항력을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나 계약상 이행 의무가 정지되는(suspended) 것에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은 법상 당연히 종료되고 채무자는 계약상 이행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제1231조).

참고로 프랑스 민법 제1195조에서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가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관하여 재협상(renegoti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리의 발생국이자 대륙법 국가인 프랑스 법체계에서는 비록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민법 상 불가항력의 정의 기준에 따라 이에 해당하면 동 조항의 원용이 가능한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IV. 중국

---

중국 계약법 제117조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연기한 이후 불가항력이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본 법에서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미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소위 'SARS') 발병 시에도, '사스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몹시 이례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 폭발한 전염병으로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광범위한 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의학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인류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상 불가항력사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중국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고 하나, 분쟁 발생시 중국 밖에 있는 다른 국가 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 V. 일본

---

불가항력에 관한 일본의 법리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제기에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면책이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불가항력의 범위 및 불가항력의 효과(면책의 범위, 해제권의 유무 등)는 개별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불가항력의 사유와 관련하여 “감염증”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력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VI. 아랍에미리트(UAE)

---

UAE 민법은 제273조에서 불가항력의 요건으로 ① 양자 계약에서 문제가 될 것 ② 계약이행이 단순히 곤란(hardship)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impossible)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UAE 대법원은 여기에 ③ 예견할 수 없었을 것(unforeseeable)을 필수조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UAE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이를 원용할 수는 있지만 매우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UAE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impossible)하고 예견불가능하며(unforeseeable) 통제불가능한(uncontrollable)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 VII.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

---

우리나라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CISG”) 가입국이므로, 다른 협약가입국과 국제적인 물품매매를 하거나, 준거법이 CISG 가입국 중 한 곳의 법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ISG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CISG는 제79조에서 “당사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약에 CISG가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VIII. 마치며

---

위와 같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불가항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CONTACT

---



김철만 변호사  
02-528-5748  
cmkim@yulchon.com



황인용 변호사  
02-528-5780  
iyhwang@yulchon.com



김시내 변호사  
02-528-5744  
snkim@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02-528-5301  
joohyunpark@yulchon.com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0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